

#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의안 번호	265
----------	-----

제출연월일 : 2002.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평창군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
- 2002년에 상환 도래되는 자금 134,440천원에 대하여,
-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 『농가부채대책특별법』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지원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장기분할로 지원 받음에 있어,
- 2001년 470,000천원 자금대환 조치에 이어 2002년에 도래되는 원금 134,440천원에 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신청이 있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동의록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 함.

## 2.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20억원을 '92.6.29일 평창군의회 동의록을 얻어 '92.7.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92.8.31일 융자실행 하였음.
- 정부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 2001년 ~ 2003년까지 3년간 상환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2년거치 5년균분상환) 상환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 및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에 470,000천원에 이어 2002년에 도래되는 원금 134,440천원에 대하여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 함.
  - 본 농가부채대책자금은 연리5%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

### 3. 채무보증이 필요로한 이유

#### 가. 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2001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음.
  - 1). 채무보증액
    - 금차 대출금리와 당초 채무보증 금리가 동일함 ⇒ 연리5%
    - 금차 대출액은 대환(돌려메우기)형식이므로 기존의 상환도래액을 대환 조치하므로 보증액의 변동이 없음.
  - 2). 보증기간
    - 당초 채무보증한 기간내에서(2012년) 2002년 상환도래액중 금회 채무보증신청한 134,440천원에 대하여만 7년간 상환연기되므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변동이 없음.

#### 나. 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

- ① 2002.6.30일현재 상환도래액의 상환불가시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불가(연체이자 연17%)
  -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기타 운전자금 대출불가
- ② 미수용시 연체이자 과중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경영난 악화
- ③ 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도산시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피하여 군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④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 함.

#### 4. 관계법규 및 지침

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

나.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다.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제5조

붙임 : 1. 채무보증서(안) 1부.

2. 채무보증신청서 사본 1부. “끝”

# 채 무 보 증 서(안)

제 호

봉평농협장 귀하

평 창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 평창군 용평면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조 도 원
2. 채무건명 :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 지원자금 대출 채무보증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중 2001년 상환도래액의 일부)
3. 채 무 액 : 금일억삼천사백사십사만원(W134,440,000)
4. 이 자 율 : 년 5%
5. 상환기간 : 2002년 6월 ~ 2009년 6월(7년간)  
(평창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 유리온실 시설재배 및 법인운영 수익금
7. 담 보 : 성장작목시범단지 시설물(유리온실 4동/6,000평, 저온저장고 1동 /200평) 및 농가부동산 - 기 담보설정분
8. 융자재원(대환자금과목) :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금융농업중기대출금)
9. 관계기관 : 봉평농업협동조합(장평지소)
10. 채무보증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1. 기 타
12. 준수사항
  - 가. 채권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평창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채권자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 사. 집행기관과 채권자는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재 산 영 농 조 합



우 232-93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60번지 ☎(033)334-0160 /전송:332-9884

문서번호 재산 2002- /

시행일자 2002. 4. 10.

발 신 재산영농조합법인

수 신 평 창 군 수

선 결	소장	이영영	지 시		
접	일 자	4.10	결	과장	유영진
	시 간		재		
수	번 호	1.210	·		
처 리 과	농경영리		공	감 당	장영진
담 당 자	이재환		람		

제 목 : 정책자금 장기분할대상 대출금 원금상환 신규지원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1년도 농가부채대책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자금을 신규지원 받고자 채무보증을 신청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 6월 30일 까지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 134,440천원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 5%로 지원받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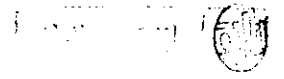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2003년	계
470,005천원	134,440천원	105,880천원	710,325천원

※ 별 첨 : 채무보증신청서

재 산 영 농 조 합 법 인 대 표 이 서



# 채무보증신청서



평창군수 귀하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도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농가부채 특별법」 지원자금 대출 채무보증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농가부채대책 및 경영안정대책” 융자금 대환)

## 2. 내 용

- 가. 채권자 : 봉평농협장(장평지소장)
- 나. 채무자 : 재산영농조합법인
- 다. 채무액 : 금 일억삼천사백사십사만원 (₩134,440,000)
- 라. 이자율 : 년 5%
- 마. 상환기간 :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바. 상환계획: 농산물판매 원금이자 분할상환

## 3. 사 유

- 가. 주채무발생 : 2002년 6월 30일 현재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과 농가부채 및경영안정대책 융자금 상환 도래 원리금
-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 정부의 「2001년 농가부채 특별법」에 의거 농가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2002년 6월 30일까지 상환도래된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과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융자금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연기(대환)코자 하나 농림사업자 신용 보증서 발급 및 담보물 부족
-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지방제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2항, 지방자치법 제115조,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라. 기타

#### 4. 준수 사항



- 가. 주 채무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 하겠습니까.
- 나.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수 의승인을 얻겠습니까.
- 다. 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겠습니다.
- 바. 채무자 재산영농조합은 위사항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합원과 '임직원'이 일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채무 지불보증위퇴 신청자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도원



# 관계법규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제4항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는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